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세·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3 연구 주제

-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관세평가 부문

1.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방안
2. **CIF체계**에서 **운임** 및 관련 비용의 평가처리
 - 운임가산의 원칙과 사례를 중심으로 -
3. 구매자의 **자기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4.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따른 관세평가 처리
5.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판단기준 연구
 - 제3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매선택권 -
6.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품목분류 부문

1. 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관한 연구
2. 관세율표 "**식이보조제**" 호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3. 각종 **자동차 전장부품**에 대한 적절한 품목분류 연구
4.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관한 연구
5.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과 **HS 품목분류 적정성** 확보방안 연구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 **별첨 5** 참조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논문형식 및 분량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참조)하되, **자유 형식 가능**
 -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 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 논문 후단에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4.4.8(월) - 5.20(월)**
 -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042-714-7549 / wlals0430@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전경원 주무관
☎ 042-714-7534, 7528 / yong7377@korea.kr, kyeongone@korea.kr

6 논문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월)**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검증 및 심사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8 시상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려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 발표 : 2024.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ganseoyoungomotion.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9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연구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대표자

| | | | | | |
|------|----------------------------------|---------|-----------------|-----|--------------------------|
| 성명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 | |
| 부문 |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 연락처 | 010-1234-5673 | 이메일 | 000000@ customs.go.kr |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 | | | |
| 논문주제 |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 | | | |
| 연구방안 | 연구개요 작성 | | | | |

팀원

| | | | | | |
|-----|-----|-----|----------|-----|--------|
| 성명① | 김길동 | 소속 | 관세컨설팅(주) | 직위 | 컨설팅본부장 |
| 전공 | | 연락처 | | 이메일 | |
| 주소 | | | | | |
| 성명② | 박길동 | 소속 | 관세법인 대전 | 직위 | 관세사 |
| 전공 | | 연락처 | | 이메일 | |
| 주소 | | | | | |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속 :

○ 직위 :

○ 성명 :

(서명)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참가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상기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항목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공, 주소 | 공모전 운영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제3자 제공 항목

|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목적 | 보유·이용 기간 |
|---------------|--------|-------|----------|
| 우수작채자 인쇄업체 | 성명, 소속 | 책자 발간 | 3개월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관세평가 부문]

주제 1 다국적 기업의 TP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연구배경]

- 최근 국제무역은 글로벌화와 분업화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의 그룹 내 회사들 간의 국제거래(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 함
 - 다국적 기업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계층화된 지배구조를 통하여 그룹 전체의 최대 이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 간 ‘이전가격’은 내국세 당국뿐만 아니라 관세당국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어왔음
- 다국적 기업들 간의 ‘이전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내국세와 관세분야의 국제적 규범은 각각 OECD와 WTO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전자는 「OECD 이전가격 책정가이드라인」(이하, ‘OECD TPG’ 또는 ‘TPG’)이며 후자는 「1994년 GATT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관세평가협정)으로 대표됨(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규범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탈루를 방지하려는 관세 당국의 입장과 고가신고로 인한 과세소득의 부당이전을 방지하려는 내국세 당국의 상반된 관점으로 인해 두 체계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음
 - 두 체계를 조정·통합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있어왔으나 두 과세당국간의 상반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WCO를 중심으로 현재 WTO 평가협정의 틀 안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WCO 예해 23.1 사례연구 14.1, 14.2 채택,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책정에 대한 WCO 가이드 발표)
- 다국적 기업 간 이전가격(TP)와 관련하여 관세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은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국가 간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전가격 세제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을 관세과세가 결정시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하는 문제임

-
- WCO는 2015년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책정에 대한 WCO 가이드」를 발표하였으며 동 가이드 5.3에서는 수입 후에 발생하는 이전가격 조정(특히, 국세목적만을 위한 조정이 아닌 실제 가격의 조정)에 대하여 **상향 및 하향에 있어 일관되게 관세과세가격 결정시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WCO 예해 4.1의 ‘가격조정약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여러 유형의 TP조정 중에서 수입 후 납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의 조정을 사후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이라 하고 실무상 ‘TP 사후보상조정’이라 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10년 이후 TP사후보상조정을 관세평가 상 거래가격의 기초인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의 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음(TP 상향 또는 하향에 따라 세부요건은 국가별로 상이)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2017년 3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하고 사후에 실제로 지급·영수되는 TP사후보상조정 금액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 신고대상)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대부분의 TP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세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상 처리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기존의 수입대가의 실제지급(실제지급가격)이라는 입장(2011년 이전)에서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급 또는 영수되는 금액을 각 개별 사안별로 영업이익(즉, 손해보전)인지 수입물품의 대가인지 또는 기타의 금액인지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TP사후보상조정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2017년에는 상기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3호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하여 확장된 개념의 ‘가격조정 약관’으로 인정하여 TP 사후보상 조정을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수용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상기 규정 개정과 별도로 TP사후보상조정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가격조정약관의 충족 여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발생 원인’ 등을 검토하여, 관세평가 상 ‘실제지급가격’, ‘사후귀속이익’ 또는 ‘수입물품 가격과 **관련 없음(즉, 소득조정)**’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모호한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실무상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후보상 조정에 대하여 법원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

* 대법원 2019두50373(2019.12.12.), 대법원 2022두 35275 (2022.6.16.) 참조

-
- 특히, 국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재화 등 거래에서의 가격(TP)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을 '소득의 조정'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내국세(법인세)와 관세(과세가격)에서 모두 제외됨에 따라 합법적인 국부 유출을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따라서, WCO의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책정에 대한 WCO 가이드' 및 해외 주요국의 입장과 부합하고 WTO 관세평가협정의 '실제지급가격'의 개념에 부합하는 TP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을 정립하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관세부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확립 필요

【연구방향】

- 관세평가관점에서 이전가격 세제와 TP사후보상 조정의 본질에 대한 연구
 -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을 현행 관세법령 상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법령 개정 포함)
 - *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의 3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대한 개선방안
 - '수입이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평가처리와 사후보상조정 관계 연구
 -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도 TP사후보상 조정 영수금액을 감액경정 할 수 있는 절차 및 규정안
 - TP 사후보상 조정금액 중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다른 물품·용역·무형자산 등에 관련된 부분(금액)의 과세 및 공제방법, 입증책임에 대한 연구 및 입법화 방안
 - 해외 주요국가의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법령 및 사례 연구
 -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책정에 관한 WCO 가이드」의 내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배경】

- WTO 관세평가협정은 관세평가에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운송 및 관련비용의 부문에서 체약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IF원칙에 따라 수입항 까지의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관세법§30①6호)
 - 각국의 선택(local option)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EU등 대다수 국가는 CIF원칙을 채택하였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FOB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각 국의 법령을 따라야 하며, 협정은 제8조에서 수입물품의 운송비용(cost of transportation)을 언급하고 예해21.1에서는 FOB평가제도에서 C&F 및 CIF가격에서 공제는 **실제비용(Actual cost)**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 뿐임
 - 협정서설 및 제8조 상 가산조정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산요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24⑤)
 - 운임의 가산과 관련하여 ‘20.10.7.개정 전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가산할 운임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운임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다는 CIF 원칙과 무상운임·구매자 직접 운송 시 적용되는 통상운임 규정과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개정되었으며 해당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가고시 제24조 제5항 각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이에 따라 FOB가격조건에서 운송수단 변경 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임에 대한 규정 명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여러 분쟁^{*}이 있어 왔음
-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064(1993.12.7.), 대법원 2016두47321(2016.12.15.)>
- 현행 법령상 해석이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본이나 EU등 CIF국가의 규정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운임의 가산방법에 대한 연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발생하는 비용**’의 의미와 동 조항 적용 시 수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운임이 없거나 저가인 경우 평가 처리
 - 운송주선인이 선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운임의 가산 여부
 - 통상운임 적용의 근거와 구체적 요건
 - 실제지급가격과 Actual Cost의 관점에서 운송비용(Cost)과 통상운임의 관계
 - 운임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란? 입증책임의 소재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
-
- 아울러, 국제거래에서 운임은 국제 정세, 유가의 등락, 전세계 물동량의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운송인과 화주간의 운송계약은 시장상황이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계약이나 거래의 유형을 운임의 관세평가 상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방향]

- **현행 법령 상 운임가산의 원칙과 예외 및 관세평가 상 쟁점*** 분석, 제도개선 방안
 - * 소액물품 항공운송특례(시행규칙§4의3②)와 탁송품 운임 적용
 - ** FOB 거래에서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현저히 저가(\$1)일 때 통상운임 적용 여부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운임 관련 유권해석 및 평가 사례 수집·유형화**
 - **해상 운송계약 실무 및 상관행에 따른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평가처리**
 - * 계약구분(개품·용선 등), 운송수단(컨테이너·벌크·탱커), 운임 종류·부대비용 등
 -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운송계약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석**
(선사·항공사 ↔ 운송주선인 ↔ 구매자 또는 판매자)
 - **특수물품(원유, LNG, 석탄 등)의 운송계약과 쟁점 사례 및 유형 분석**
 - **EU·일본 등 CIF국가의 운임관련 관세법령 체계와 우리나라 법령 비교**
-

관세법 §30(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6호‘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시행령§20(운임 등의 결정) | 시행규칙 §4조의 3(운임 등의 결정) | 고시 §24(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
| <p>①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p> | | <p>①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양륙 제외)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p> |
| <p>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때 운송거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p> | <p>① 영 §20②에 따른 운임 1. 자력운항 운송수단 수입(실제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2. 용선계약(왕복운송), 일괄운송계약: 중량기준 안분(예외: 가격 기준) 3. 수출입항의 총 허용정박시간 만 있는 경우: 체선료(허용정박 시간으로 반분), 실제 공제 받은 조출료(운임포함X) 4. 탁송품 과세운임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p> | <p>②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항해용선계약은 상법§838①통지발송 시</p> |
| <p>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봄(항공운송 특례)</p> | <p>② 영 §20③의 물품(1호~12호)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 무상·자가사용 물품, 소액 이사화물, 여행자휴대품 등(1~9호), 항공사용 물품(10호),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11호), 천재지변 등(12호)</p> | <p>③ §30①6호의 금액 1. 운송계약: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 2. 용선계약: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공선회조료 포함)</p> |
| <p>④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1. 직접운송 물품(수입자/특관자)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 물품 3. 기타 특수조건</p> | <p>③ 2항 1~9호 : 선편 소포 운편물 요금 2항 10~11호 : 통상 선박운임</p> <p>④ 제2항 각호 물품에 대한 보험료: 보험사업자가 통상 적용하는 항공기외 일반적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p> | <p>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1호~8호) 밀출: 과세 1. 선적자재비 및 선박개장비 2. 수입항 하역비(구분표시) 3. 선적항 체선료(구매자부담) 4. 수입항 체선료(항해용선) 5. 컨테이너 문전배달(수입항도착 후 운송료 구분시 비과세) 6. 컨테이너 입차료 7. 수입항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운임과 구분시 비과세) 8. 탁송품(수입항까지 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선적항 조출료 공제 시 과세가격 불포함(잠정신고), 수입항 조출료 과세가격 공제X</p> |
| <p>⑤ 법§30①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p> | | <p>⑤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산</p> |
| <p>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항공운임특례) 적용: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시 증명자료 제출</p> | | <p>1. 수출판매계약상 판매자 부담: 실제지급가격 포함 취급(단 구매자 별도 지급시 가산) 2. 수출판매계약상 구매자 부담: 실제지급가격 불포함 취급(가산) 3. 선박→항공(항공운송특례 제외) C,D조건: 구매자 지급시 가산 E,F조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당초약정에 따라 판매자부담: 비가산</p> |

【연구배경】

- 실제지급가격(PAPP)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임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
 - 따라서 실제지급가격은 송품장에 표시된 금액뿐만 아니라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협정 부속서Ⅲ의 실제지급가격의 정의에 따르면 간접지급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함(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시행령 제20조의 2)
- 1) 한편,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는 가산요소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buyer's own account)으로 수행한 활동(activities)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 구매자의 자기계산행위는 주로 물품 구입 후 수입 전에 구매자 자신만을 위한 활동(제3자와 계약에 따른 검사료·보관료 등)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마케팅’ 등에 관련된 경우로 광고, 하자보증, 판촉 등의 활동이 있음(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 더나가 협정은 “만약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활동을 비록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라도,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다면,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님”을 명시(협정 제1조 제1항 b의 주해)



- 실무상으로는 광고 선전비나 하자보증비용과 같은 마케팅 비용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격의 할인이나 권리사용료 등의 간접적인 지급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협정에 따를 때 마케팅 비용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는지에 따라 평가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WCO 예해 16.1·예해 20.1)

* 자기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고 경제적 효과(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대법원 2001다44109)

- 한편, **우리 관세법령**에서는 **판매자(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를 간접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케팅 활동의 책임 또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간접지급액 해당 여부를 판단**

* <참조판례> 대법원93누17881, 2013두14764, 2015두 52098, 2018두 56619



- 2)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은 ‘**실제지급가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아닌 제3자(국내 최종수요자 등)가 원재료 확보를 위하여 판매자와 별도계약을 통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 수출 쿠틀비용이나 물량확보를 위한 급행료(웃돈)의 수입물품의 대가(판매조건) 여부
- 구매자↔판매자↔국내수요자↔구매자간 계약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판매조건 혹은 간접지급금액으로 간주(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의 간주) *협정서설의 ‘특정 요소를 구매자가 발생시킴(부담함, incurred by the buyer)에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판단

【연구방향】

-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와 간접지급금액의 합리적 판단기준 연구
 - 하자 보증비와 광고 선전비 등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연구
 - * WTO 관세평가협정과 우리 관세법령의 정합성과 실무상 처리방안
 - 다국적 기업 마케팅비의 성격을 파악하여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안(TP스터디에 따른 원가결정 시 마케팅비를 본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급)
 -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금액) 범위 연구
-

【연구배경】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조정되는 가산요소로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생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3호까지는 “생산지원 물품”을 제4호는 “생산지원 용역”을 의미함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관계) WCO 예해 18.1에서는 생산지원 물품 중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생산지원 용역의 관계를 “기술, 개발 및 디자인 등이 공구, 금형 또는 주형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 이 경우에는 생산지원 물품으로 보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생산지원금액은 예해 18.1에 따라 “체화된 디자인(비록 그 디자인이 수입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할지라도)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산함
 - 이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 제3항에서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함
 - 마찬가지로 WCO 사례연구 8.1에서는 “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패턴지”를 생산지원한 경우 “패턴지는 제8조 제1항 (b)호 (ii)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디자인 비용을 포함한 패턴지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생산지원 용역의 범위) WCO 사례연구 8.2에서는 “뮤직비디오 클립을 마스터 테이프에 편집”하여 생산지원한 경우 “편집은 디자인과 수입된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에 대한 개발단계의 일부”이며 “디자인과 개발은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생산지원 용역으로 보아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한다고 규정함
 - 사례연구 8.1과 8.2는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는 물품”을 각각 생산지원 물품(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등) 또는 용역(물품은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체)으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 (쟁점 사안)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에 따라 전자적 전송을 통한 무형(무체물)의 생산지원이 통상 이루어짐에 따라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는 물품 또는 디자인(용역)의 생산지원(intellectual assists)에 대한 관세평가 처리가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쟁점이 되고 있음

(i) 생산지원 요소(1호~4호)의 구분 기준

- 물품과 용역은 단순히 유/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범주의 경계)
- 수입물품에 **결합/생산에 사용/생산과정에 소비/생산에 필요한의 의미**

(ii) WTO 관세평가 협정 제8조 1(b)(i)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와 관련하여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similar **items**)에 무형의 구성요소(intangible components) 포함 여부

(iii) 인터넷이나 데이터 저장매체로 수출자에게 제공되어 수입물품에 탑재(설치)되는 S/W의 생산지원 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

* EU 관세법위원회 결정26·28, EU 대법원 C-306-04('06.11.16), C-509/19('20.9.10)

(iv) 해외임가공업체에게 패키징 가공공정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출한 **회로설계가 체화된 웨이퍼**를 제1호의 생산지원(재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국내 개발 회로설계 (설계비용 비과세) vs. 설계가 체화된 웨이퍼 (설계비용 과세)

* <참조 결정례> 조심 2022 관 0134('23.6.21)

【연구방향】

• 생산지원 쟁점 사안에 대한 사례연구 및 관세평가 처리 방안

• 디자인·기술·설계·고안 등 지적 생산지원(용역)의 범위* 구체화

* 무체물(CAD파일·소프트웨어 등)의 생산지원 시 시행령§18 1~3호 해당여부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관계 정립 및 사례 수집

• 생산지원 범위 관련된 해외사례 수집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권리사용료, Royalties & Licence Fees)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판매조건으로 지급)**을 충족하여야 함
- 불복 및 재송과정에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관점 상이)이 빈번히 발생
 - 무형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기 때문에 원가과약 불가 등의 사유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위탁생산·임가공 등 형태로 제조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고 권리사용료를 제3자(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래 조건성 여부
 - * 특수관계자간 위탁생산 시 평가고시§21②3호(통상실시권) 적용 가능성 검토
 - 구매자에게 수입물품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면 통상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성이 인정됨**
반면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무조건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대법원 91누7958(199.4.27선고), 대법원 2014두13362(2016.10.2.선고), EU Commentary13
 - 수입물품과 관련성·거래 조건성을 충족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 및 계산의 문제

【연구 방향】

- 외국 및 국내(심사, 불복, 재송 등) 사례 수집을 통하여 **권리사용료 가산(비가산)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시사점 분석**
- ‘구매에 대한 선택권’과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상관관계 분석**
- 하여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른 권리사용료 가산 사례 및 기준 연구
- 국내외 사례 및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한 **판단 기준 연구**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가산 여부

【연구배경】

- 관세법은 외국물품의 관세납부가 유보된 상태에서 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지정하거나 특허하는 ‘보세구역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됨
 - 수출산업 지원 및 가공무역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된 ‘보세공장’ 제도는 제조·가공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로 수입되는 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188조 본문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된 물품 자체를 ‘제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법(①제품과세)을 적용함
 - 다만,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원재료의 가격(수량)에 상응하는 부분을 과세하는 방법(②부분적 제품과세)과 법 제189조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③원료과세)으로 내국원재료와 국내(보세공장 제조·가공으로 발생한)부가가치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음
-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수직 계열화, 분업화로 인하여 보세공장의 위탁 임가공 거래가 빈번하고 실무적으로도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이나 타보세공장·장외작업장에서 보세작업을 거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① 위탁자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 한 내국원재료를 생산지원한 것으로 보아 제품과세 시 내국원재료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사례
 - * 참조판례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조심2016관0211 등>
 - ②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무상수입 수탁가공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자의 현지 취득가격에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더하여 과세한 사례
 - * 참조판례<대법원 2022두38007 (2022.6.30. 기각) >
 - ③ 내·외국 물품 혼용승인을 혼용작업 이후에 받은 경우 그 승인 이전에 투입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전부 제품과세한 사례
 - * 참조판례<대법원 2019두55781 (2023.8.31.)>

④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인 쟁점물품(폐타겟 스크랩)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구매가격이 아닌 국내 수요업체 판매가격으로 과세한 사례

* 참조 결정례<조심 2016관0192(2017.6.26.)>

- 보세공장 제품과세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하나 관세 납부가 유예되고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납세자측의 불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의 상충을 완화**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납세자가 임가공 위탁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원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
 -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계(재화의 거래와 용역의 거래)
 - 국내발생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제조·가공비용 및 판매이익)
 - 내국 원재료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국내산 보세원재료 및 수입 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
 -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문제

【연구방향】

- 보세공장 제품과세·임가공 물품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 * 보세공장제도(법령·특이점)와 WTO 관세평가협정·평가규정 적용 시 문제·해결방안
 - 보세공장 제품과세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국내외 주요국의 보세공장 관련 제도 및 법령 비교 분석
 - 보세공장간 거래단계를 거친 후 통관되는 잉여물품의 관세평가
 -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02.1.24)의 해석·적용 및 개선
-

[품목분류 분야]

주제 1 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 (2022 HS 개정) 제8539호 및 제8541호의 범위 확대
 - 램프 형태가 아닌 LED 모듈로서 제8541호 범위를 벗어나는 LED 어셈블리를 제8539호에 포함토록 호의 범위 확대

| HS 2017 | HS 2022 |
|--|---|
|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 (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 (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
|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5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8539.52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

- 반도체 트랜스듀서를 제8541호에 포함하도록 호의 범위 확대

| HS 2017 | HS 2022 |
|--|---|
| 85.41 -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생략) |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생략) |
| 8541.5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

- 반도체 디바이스의 개념에 대한 주(Note) 규정 개정

| HS 2017 | HS 2022 |
|--|--|
| 제85류 주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 · 수동부품을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생략)있지 않다. |

-
- (문제점) 2022 HS에서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수동 부품을 장착”한 조립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나
 - WCO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의 맥락으로는 제8541호에 포함되는 물품(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끼리 결합된 모듈은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면, 제8541호 물품과 기타 호의 물품(저항기 등)이 결합된 모듈은 제8541호에서 제외되어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구방향】

- 제8541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의
 - 반도체 디바이스, LED 모듈, 반도체 트랜스듀서 등
 -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다른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조립품이 제854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

【연구배경】

- 2017년 12월 WCO 제53차 RSC(검토소위원회)에서 “식이보조제(또는 식이보충제)”를 제 2107호에 신설하는 안(案)이 확정됨(※제21류는 현재 제2106호까지 있음)
 - “식이보조제” 호 신설(제2107호)에 따라 WCO에서 관세율표 및 HS해설서 개정이 검토 진행 중
 - HS 제1부부터 제4부 물품에서 일정한 용량*으로 제공되는 “식이보조제”가 신설 호에 우선 분류될 예정이고 호 신설에 따라 HS 각 해당 호에 분류되고 있는 물품이 대거 제2107호로 이동 예상
- * 1회 복용 목적 소량의 분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제, 앰플, 캡슐, 카세, 드롭 또는 알약

(제21류 주 4호 신설) 식이보조제는 식품에서 유래하거나 합성을 통해 얻은 하나 이상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농축물, 추출물, 분리물 등에 기반을 두거나 이들로 구성된 일반적인 식단의 보충제로 쓰이는 조제품. 이에 해당하는 제품의 감미료, 색소, 향료, 냄새 물질, 담체, 충전제, 안정제 또는 기타 기술 보조제 등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음

- 신설 호에 대한 식이보조제 범위의 확정을 위해 24년 3월, WCO 제73차 HSC(HS위원회)에서 식품과 관련된 호 전반에 대해 분류 검토가 아래와 같이 이뤄짐

< 검토 중인 내용(일부) >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식이보조제로 생강분말을 포함할 것인가?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식이보조제로 식물추출물을 포함할 것인가?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식이보조제로 제15류 유지를 포함할 것인가?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식이보조제로 제22류 일부 액상제품을 포함할 것인가?

- 국내에는 “식이보조제”와 유사한 개념인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 관련 국내법에서 정의
 - 건강기능식품은 개별 인정원료 확대, 개인맞춤형 및 융복합 제품 출시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연구방향】

- 관세율표상 “식이보조제”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필요
 - “식이보조제” 정의(규정)에 따라 신설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 검토(분류사례 등)
 - 국내법상의 “건강기능식품”로 수입되는 물품 중 식이보조제 해당 여부 등
- “식이보조제” 호 신설에 따른 HS해설서 개정 필요 부분 검토
 - ※ HS해설서상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ary supplement)”

■ HS 해설서

- 제2106호 : (16)식이보조제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중략)...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 HS 해설서

- 제2102호 : (B)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의 특정한 물품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식이보조제나 동물의 사료용으로 포장될 수 있고.(후략)
 - 제2205호 :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형태의 음료로서 비타민류나 철 화합물을 첨가하여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 때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제2206호 :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이나 철 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 때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들은 일반 건강이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배경】

- 자동차 동력원이 화석연료에서 전기 및 수소로 변화하고 운전자의 편의성이 증대됨에 따라 차량 내 전장부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장부품의 산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세계 우수 기업들은 전장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육성 중이며 이에 따른 무역 규모도 점차 확대될 전망

【연구방향】

- 제8708호의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되거나 소재에 따라 39류 등 소재세번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일반 부품과는 달리 대부분의 전장부품은 그 부품의 고유기능에 따라 제85류 및 제90류 등에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전장부품의 품목분류가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논문을 통해 국내외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전장부품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부품별 적절한 품목분류(HS Code)에 대한 연구 필요

【주의 사항】

-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세계HS시스템)에 등재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e-book형식으로 24년 4월 등재) 중 제5장 전기(전자)장치’ 사례를 제외한 전장부품을 예로 들어 논문을 작성해야 함. 다만, 분류 논리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동 책자의 사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

【연구배경】

- (배경) 관세율표 전체를 살펴보면, 제4부(16류 ~ 24류), 제6부(28류 ~ 38류), 제11부(50류 ~ 63류)에는 소매용 or 소매용 포장 or 소매용 모양으로 한 것을 별도로 분류하는 호가 다수 있음
- (문제점) “소매용 or 소매용 포장 or 소매용 모양” 정의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 관세율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소매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통칙 제3호 나목 해설

“소매 판매(retail sale)”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1) 100g 튜브에 담긴 접착제를 단독으로 제시할 경우 : 제3506.10호
- 2) 100g 튜브에 담긴 접착제 20개를 종이박스(2kg/box)에 담아 제시할 경우 : ?
 - * 튜브에 담긴 형태(100g)를 소매용으로 볼 경우 제3506.10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최종 포장상태인 박스에 담긴 형태(2kg)를 소매용으로 볼 경우 중량이 1kg을 초과하여 제3506.10호에 해당하지 않음
- 3) 100g 튜브에 담긴 접착제 1000개를 종이박스(100kg/box)에 담아 제시할 경우 : ?
 - * 튜브에 담긴 형태(100g)를 소매용으로 볼 경우 제3506.10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최종 포장상태인 박스에 담긴 형태(10kg)로 판단할 경우 대형 생산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포장이기 때문에 제3506.10호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방향】

-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의 “소매 판매”에 대한 설명의 사례별 상세 해석
- 각 호 해설의 “소매용 포장”과 “소매용 모양”을 해당 호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호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연구
- “소매용”과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연구배경】

-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마다 상이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HS 품목분류에 따른 탄소국경세 부과로 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
- 중국 또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미국도 '청정경쟁법안'(CCA : Clean Competition Act)'을 발의하여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됨
- 전세계적 탄소국경세 도입방안은 ESG 시대의 거시경제적 환경변화이며, 최근 탄소규제가 관세(tariff) 부과의 형태로 확대되는 점에서 관세 품목분류와 탄소규제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의 관련 산업군 품목에 대한 HS 품목분류 연계방향 및 HSK 개정방향 검토가 필요함

【연구방향】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체 및 수출품 분석
 - 해당 품목군의 HS 품목분류 연계방향, HSK 개정방향 및 개정안 제안(HS 호·소호의 분할 또는 세분화 등 포함)
-

연구논문 작성 요령 (참조용)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구분 | 위/아래 | 오른쪽/왼쪽 | 머리말/꼬리말 | 제본 |
|----|--------|--------|---------|-----|
| 여백 | 각 20mm | 각 30mm | 각 8.5mm | 0mm |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I,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 구분 | 전개번호 | 크기 | 구분 | 전개번호 | 전개번호 위치 |
|----|------|----|----|--------|-------------------|
| 장 | I | 16 | 표 | <표 1> |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
| 절 | 1 | 13 | 그림 | [그림 1] |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
| 항 | 1) | 12 | 수식 | (1) | 수식 뒤(우측 끝) |
| 목 | (1) | 12 | | |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 구분 | 크기 | 비고(표기) | 구분 | 크기 | 비고(표기) |
|---------|----|--------|---------|----|--------|
| 표지의 제목 | 16 | 진하게 | 부록제목 | 12 | <부록 1> |
| 본문의 소제목 | 13 | | 수식 | 12 | (1) |
| 본문 내용 | 12 | | 소속 | 10 | |
| 성명 | 12 | | 각주 | 10 | 1) |
| 요약 | 12 | <요약> | 표 속의 글 | 11 | |
| 표제목 | 12 | <표 1> | 그림 속의 글 | 11 | |
| 그림제목 | 12 | <그림 1> | 부록 속의 글 | 11 |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 구 분 | 선 모양 | 비 고 | 구 분 | 선 모양 | 비 고 |
|----------|------|-----|--------|-------|-----------|
| 맨 위/맨 아래 | ———— | 진한선 | 내 부 | | 보통선 또는 점선 |
| 왼 쪽/오른 쪽 | | 투명선 | 표두 아래쪽 | ==== | 이중 실선 |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은 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작성양식예시)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Study on the scope of assessment to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홍길동(洪吉童), 관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길동(金吉童), 관세컨설팅(주), 컨설팅본부장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10-5678-1234, bbbbb@customs.go.kr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 II. 선행 연구 검토 | 4 |
| 1. 관세평가 제도의 도입 | 5 |
| 1) GATT | 6 |
| 2) WCO | 7 |
| 참고문헌 | 8 |
| 요약 | 9 |

※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 필수 작성 · 제출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 관세당국의 협의체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¹⁾에서는

<표 1-1>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현황

(2015년 3월 현재)

| 도입 시기 | 설치 항구 | 설치 대수 |
|---------|-------|-------|
| '02-'05 | 부산항 | 4대 |
| '02-'05 | 인천항 | 3대 |
| '03 | 광양항 | 1대 |
| '03 | 평택항 | 1대 |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

1)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coomd.org

[그림 1-1] AEO 공인심사 절차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관세,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한일제도 비교연구 및 향후 세관의 미래 -한일 AEO 제도를 중심으로 -”, 관세청, 2011.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AEO종합심사통합(Ⅱ)」, 2009.
- 관세청, 「AEO 가이드북」, 2009.
- ,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1.
- , 「선진 Supply Chain Security 운영체계 연구·분석」, 2007.
- 우성구·김재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구무역상무학회, 2010.

2. 외국 문헌

- Barry Brandman, "C-TPAT Part II: Strategic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2006.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요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